

「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7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최찬웅)

○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확대(안 제4조)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138조에 규정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

○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7조)

- 지방재정법 제116조 ⇒ 지방재정법 제95조
- 지방재정법 제115조 ⇒ 지방재정법 제94조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-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한글 맞춤법 및 알기쉬운 우리말 표현 원칙에 따라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